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397
----------	-----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6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심현정, 이은미 의원

## 1. 제안이유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에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된 정주요건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기존) 신혼부부 주거자금 → (변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나.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신혼부부 주택 매입 대출이자 지원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중
- (확대) 다자녀가구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다. 지원요건

- (기존) 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변경) 다자녀가구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단위 : 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b>중위소득 180%</b>	<b>7,078,784</b>	<b>9,045,635</b>	<b>10,975,991</b>	<b>12,794,746</b>	<b>14,516,649</b>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다.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5. 2. 19. ~ 2025. 2. 27.(9일간), 의견없음

##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신혼부부의**”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로, “**신혼부부 주거자금**”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매입 자금**”을 “**매입 또는 전세자금**”으로 한다.

2.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거주하는 주택 외 세대 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을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이하인 가구**”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7조제1항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신혼부부**”를 각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혼부부**”를 각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u>신혼부부</u>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u>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u>&lt;신 설&gt;</u></p> <p>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p>	<p style="text-align: center;"><u>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u>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u> ----- ----- <u>신혼부부 및 다자녀가</u> <u>구 주거자금</u>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자녀가구</u>”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u>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u> <u>구를 말한다.</u></p> <p>3. ----- <u>매입 및 전세자금</u> ----- -----</p>

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균수(이하 “균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주택 외 세대 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
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

---

1. (현행과 같음)
2. -----  
-----  
-----

-----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  
이하

<신 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  
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  
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  
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

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  
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  
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할 것

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  
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을 것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  
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  
부 및 다자녀가구 -----  
-----  
-----

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 4. (생략)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  
-----  
-----  
-----.

②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

③ -----  
-----  
-----.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

2. ~ 4. (현행과 같음)

④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  
-----  
-----.

⑤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20년월일	일(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부 합산소득 금원	가족사항 (지녀수)	( )명	
			주원면적	소재지
대출현황	금융기관명	대출잔액(원)		
	대출기간	대출이율 ( )%		
이자납부액	이자납부액			
자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 신청인 본인 명의		
<b>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b> 20년월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b>평창군수 귀하</b>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서류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유}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총} 소득액을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 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등감 사본 <b>*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b>				

실) ① -----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  
 -----.

② -----  
 -----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본인)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20년월일	18세이하 자녀수	명
신청가구 소득기준	부부 합산소득 금원	가족사항 (지녀수)	( )명	
			주원면적	소재지
대출현황	금융기관명	대출잔액(원)		
	대출기간	대출이율 ( )%		
이자납부액	이자납부액			
자금계좌	금융기관	예금주명		
	계좌번호	* 신청인 본인 명의		
<b>위와 같이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b> 20년월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b>평창군수 귀하</b>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상세)증명서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5. 지방세 서류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6. {소득유}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총} 소득액을 사실증명원 7. 대상주택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8. 건축물대장 9. 대출 금융기관 부채 증명원 및 이자상환 내역서 10. 신분증, 신청인 등감 사본 <b>*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b>				





[개정안 본문]

## 평창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다자녀가구”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3.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2. 부부 모두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

한 경우에 한함)가 등재되어 있고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3.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②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해당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 매입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거주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나.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

2.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4.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경우

5.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평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
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
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 다자녀가구는 부모 중 1명**이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여부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략)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 (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 7.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5조제1항 관련)

### 2. 우선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구분	공급 비율	입주자격
다. <u>다자녀</u> <u>가구</u>	10퍼센트 범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지원대상의 범위에 다자녀가구도 포함 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증가로 추가 소요예산 발생

###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매입 대출이자에 한정한다.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연1회 지원

### 나. 추계결과

- 1차년도 50가구 × 3,000,000원 = 150,000,000원
- 2차년도 100가구 × 3,000,000원 = 300,000,000원

### 다. 재원조달 방안 : 군비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
연락처	(033) 330 - 247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주거자금 대출이자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지방세 (군비)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3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